PRADIUM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인터넷 청약 안내

청약방법 안내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을 청약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절차가 간소화되었으니 신청자격에 대한 검증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인증서 발급 (반드시 청약 전 미리 준비하세요!)

인증서 7종류 중 택 1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톡인증서

※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

청약 방법 (2018년 5월 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특별공급 신청방법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www.applyhome.co.kr)
2. APT 청약 신청 클릭 (APT 특별공급 탭 선택)
3. 청약신청하기 클릭
4.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인증서 발급 참조)
5. 주택선택(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및 유의사항 확인
6. 특별공급 유형 선택
7.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 조회
8. 특별공급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거주지, 선정기준 등)
9. 유형별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 입력
10. 연락처 등 입력 및 청약신청 내역 확인

일반공급 신청방법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www.applyhome.co.kr)
2.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인증서 발급 참조)
3. 청약신청하기 클릭
4. APT 청약 신청 클릭 (APT 1순위 탭 선택)
5. 주택선택(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및 유의사항 확인
6.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 조회
7. 일반공급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거주지, 선정기준, 가점항목 확인 등)
8. 연락처 등 입력 및 청약신청 내역 확인

청약자격 입력사항

공통사항	노부모부양/일반공급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신생아
청약자격, 거주지 확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 입력	다자녀가구 배점표 입력	소득구분 체크	소득구분, 신청순위, 미성년 자녀수 입력

※ 입주자모집공고를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가상체험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가상으로 미리 체험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① 청약자격확인 ▶ ②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선택사항) ▶ ③ 세대구성원 동의 (선택사항) ▶ ④ 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이 됩니다.
※ 「세대구성원 동의」의 경우 세대원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세대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ADIUM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일반공급 청약 안내

청약일정 안내

구분	일자	시간	청약접수 홈페이지
1순위	2026.11.03.(화)	09:00~17:30	• PC·모바일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앱 ※ 현장접수(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09:00~16:00)
2순위	2026.11.04.(수)	09:00~17:30	
당첨자 선정 및 발표	3단지 - 2026.11.10.(화) 4단지 - 2026.11.11.(수)	-	• PC·모바일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앱
당첨자 자격 서류 확인	2026.11.13.(금)~ 2026.11.23.(월)	사전 예약 접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예비순위 당첨자 限
계약체결	2026.11.25.(수)~ 2026.11.29.(일)	사전 예약 접수	정당 당첨자 限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 지역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 추첨
- 2순위 : ① 지역 → ②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② 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 항목	① 무주택기간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총점
가점 상한	32점	35점	17점	84점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2년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ADIUM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일반공급 청약 안내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td><td>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td></tr>
<tr><td>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td><td>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td></tr>
<tr><td>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td><td>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td></tr>
</table>
③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tr><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able>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td></tr>
<tr><td>비고</td><td>•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able>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ADIUM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특별공급 청약 안내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구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노부모부양
거주 지역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택 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기본 자격	관계기관 추천 대상자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한 분 (혼인, 미혼 자녀 있음 또는 1인 가구)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것 (태아·입양 자녀 포함)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청약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제한 없음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제한 없음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관추천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필요 없음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요건 적용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횟수 제한 없음)	-	-	· 배우자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 배제	· 배우자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 배제 ·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시)	· 배우자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 배제	-
혼인 특례 (본인기준 1회)			본인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 배제			
출산 특례 (세대기준 1회)		해당	해당		해당	해당
기타 사항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봄.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출산 특례 신설 (세대기준 1회 적용)

항목	내용
적용 대상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기준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특례 내용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추가 조건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공통) 중복 청약 안내

구분		처리 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기관추천]특별공급 청약 안내

PRADIUM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택형별 대상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구분(약식표기)			3단지				4단지			합계
			60	84A	84B	소계	60	84	소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대상자(철거민)		-	-	-	-	1	-	1	1
	장애인	경기도	2	2	2	6	3	6	9	15
		서울특별시	-	-	1	1	-	2	2	3
		인천광역시	-	1	1	2	2	4	6	8
	국가유공자		-	1	1	2	1	2	3	5
	장기복무제대군인		-	1	1	2	-	2	2	4
	10년이상복무군인		-	1	1	2	-	4	4	6
	중소기업근로자		1	1	-	2	2	6	8	10
	북한이탈주민		-	-	1	1	-	1	1	2
합계			3	7	8	18	9	27	36	54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td></tr>
<tr><td>추천기관</td><td>
<table>
<tr><th>구분</th><th>관련 법규</th><th>해당 기관</th></tr>
<tr><td>이주대책 대상자</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td><td>LH경기북부지역본부</td></tr>
<tr><td rowspan="3">장애인</td><td rowspan="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td><td>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td></tr>
<tr><td>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td></tr>
<tr><td>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td></tr>
<tr><td>국가유공자 등</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td rowspan="2">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td></tr>
<tr><td>장기복무 제대군인</td><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tr>
<tr><td>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td>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tr>
<tr><td>중소기업 근로자</td><td>「중소기업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td>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td></tr>
<tr><td>북한이탈주민</td><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td><td>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획과</td></tr>
</table>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able>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ADIUM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 안내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택형별 대상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구분(약식표기)		3단지						4단지			합계
		60	84A	84B	88	115	소계	60	84	소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2	4	5	3	4	18	5	14	19	37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50%)	1	4	4	3	4	16	4	13	17	33
합계		3	8	9	6	8	34	9	27	36	7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단, 해당지역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가 낙첨되어 기타지역 거주자와 경쟁 시 지역우선공급은 미적용

② 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1) 미성년 자녀수</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2) 영유아 자녀수</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3) 세대구성</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4) 무주택기간</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3">(5) 해당 시·도 거주기간</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
<tr><td>5년 이상~10년 미만</td><td>10</td></tr>
<tr><td>1년 이상~5년 미만</td><td>5</td></tr>
<tr><td>(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able>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td></tr>
</table>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 안내 ①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택형별 대상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구분(약식표기)	3단지				4단지			합계
	60	84A	84B	소계	60	84	소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4	11	12	27	13	39	52	79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① 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 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③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td></tr>
</table>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 안내 ②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 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ADIUM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 안내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택형별 대상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구분(약식표기)	3단지						4단지			합계
	60	84A	84B	88	115	소계	60	84	소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2	3	1	2	10	4	7	11	2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구분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 안내 ①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택형별 대상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7% 범위)

구분(약식표기)	3단지				4단지			합계
	60	84A	84B	소계	60	84	소계	
생애최초 특별공급	6	13	15	34	15	45	60	9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구분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 안내 ②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 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신생아]특별공급 청약 안내 ①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택형별 대상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구분(약식표기)	3단지				4단지			합계
	60	84A	84B	소계	60	84	소계	
신생아 특별공급	3	7	8	18	9	26	35	53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1899-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신생아]특별공급 청약 안내 ②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 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